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8
------	------

2016. 12.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1일, 맹진영의원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맹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 관리를 금지함에 따라 투·융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도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항)
- 나. 기금의 용도에 수행기관의 비융자사업비 지원 항목 신설(안 제4조제6항)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투·융자대상의 결정, 기금운용현황 보고, 수행기관의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시 직영 관리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안 제9조)
- 바.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한 사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사회투자기금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 시 직영관리체제로 전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투자기금 운용 현황

-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었으며, 2016년 말 기금의 조성액은 103억 9천 5백만원이고, 2017년 기금의 운용 규모는 약 213억 8천 9백만원임.
- 서울시(이하 “시”)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중간지원기관 융자사업,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평균 1.2%의 금리로 최대 5년간 자금을 융자해왔으며, 기금설치 이래 1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489억 2,900만원을 융자하였음.

〈사회투자기금 융자 실적〉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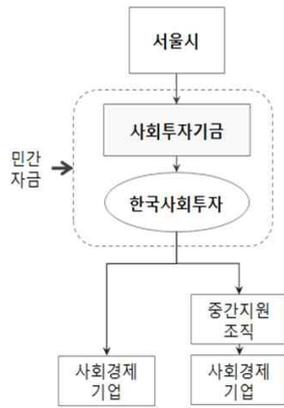
구 분	용 자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까지)
합계	48,929	10,900	7,488	14,612	15,93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15,940	10,290	2,800	1,850	1,000
소셜하우징융자사업	17,281	310	4,012	5,003	7,956
사회주택활성화융자	940	-	-	-	940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11,386	-	500	5,711	5,175
소셜임팩트펀드 융자사업	300	300	-	-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3,082	-	176	2,048	859

- 사회투자기금은 현재 (재)한국사회투자에서 위탁운용 중(위탁기간: ~'16.12)이며 2017년부터는 투·융자 방식을 통해 시에서 직영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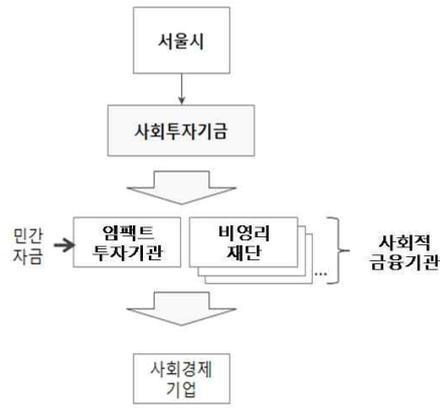
다. 사회투자기금의 시 직영관리 및 수행기관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기금의 운용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에 관한 사항과 수행기관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금의 시 직영 체제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개편 전 】



【 개편 후 】



- 시는 기존 위탁기관을 통해 시행했던 사회적기업 용자, 소셜하우징 용자,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회주택 활성화 용자,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 등 다섯 가지 용자 사업(2016년 기준) 대신,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용자를 통한 채용자방식의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업’과 ‘소셜하우징 용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임.
- 시가 직접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투융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선정기관을 통해 채용자하는 방안은 시의 법률 자문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민간위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자료-행정자치부 공문】
-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업은 시가 직접 공모를 통해 역량이 풍부한 중간지원기관(사회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연 0~2%로 융자하고, 중간지원기관이 이와 일정비율(시:민간 1:1~3:1)의 매칭자금을 자체 조달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 이하의 금리로 채용자하는 구조임.
- 시는 약 4개의 중간지원기관 용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기업 용자, 사회적 프로젝트 용자 등은 본 용자사업을 통해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임.
- 한편 ‘소셜하우징 용자사업’은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가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에 저금리(연 0~2%)로 융자한 후, 시와 민간이 1:1~3:1의 매칭방식으로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주택 및 건설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 이내로 채용자하는 것임.

〈중간지원기관 용자-소셜하우징 용자 비교〉

구분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소셜하우징 용자
중간지원기관 선정	서울시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중 시에서 직접 선정(연 2회 예정)	
용자 조건 및 기간	선정기관은 시와 1:1~3:1로 자금 자체 조달	
	연 0~2%, 최대 5년	연 0~2%, 최대 8년
채용자 대상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서울시의 건설·주택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채용자 조건	연 4% 이내	

- 다만 기존에 (재)한국사회투자를 통해 운용했던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사업 내역을 평가해 보면, 일부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2013년 시로부터 용자금을 2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자체자금 포함 총 조성금액 4억원) 재 용자 내역이 조성 금액의 14.5%인 5천 8백만원에 불과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중간지원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따라서 시는 용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거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4조제6호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중간지원기관 협력 용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비용자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비용자사업비’는 용자 이외에 용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컨설팅비용 등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그 지원 범위와 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자칫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로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시킬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용자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들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중복지원으로 비취질 우려도 있음.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 (안 제6조~제8조)

- 시는 안정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며, 안 제6조~제8조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강제 규정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 증가 등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 최대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구성되고, 수행기관 선정과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을 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절한 측면도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에 중요한 부분인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안 제9조제3항)”라고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부실 방지대책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부실한 운영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

법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출금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사후적으로는 대손 발생 시에 이를 처리할 세부적인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편 시는 약 400억원으로 예상('16년말 기준)되는 기존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융자 심사를 담당했던 (재)한국사회투자에 계속하여 위탁할 예정으로, 본 채권 상환 소요경비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 및 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58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자대상의 선정과 대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대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제6호, 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7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4. "수행기관"이란 시와 용 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 원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1.~ 5.(생략) <신 설> 6.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5.(현행과 같음)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생략) 1.~ 3.(생략) <신 설> 4.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기금운용현황 보고 5.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대손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개정안과 같음) 1.~ 5.(개정안과 같음) <삭 제> 6. (개정안 제7호와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 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 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② -----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정담당 부서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안과 같음)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신 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 회 이상 운영하고, 기금운 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안과 같음)

⑥ ~ ⑨ (생략)	⑦~⑩ (현행과 같음)	
<p>제9조(기금의 관리) <u><신 설></u></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p>	<p>제9조(기금의 관리)</p> <p>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③ 대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⑥ 제4조에 따라 투자·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기금의 관리)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u><삭 제></u></p> <p>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생략)</p>	<p><u><삭 제></u></p>	
<p>제11조(결산 및 보고) (생략)</p>	<p>제10조(결산 및 보고) (현행과 같음)</p>	<p>제10조(결산 및 보고)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존속기한) (생략)</p>	<p>제11조(존속기한) (현행과 같음)</p>	<p>제11조(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생략)</p>	<p>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행기관"이란 시와 용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융자사업비 지원

제6조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4. 기금운용현황 보고
5.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업무 소관 국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예산담당 부서장"은 "재정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제9조제2항,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4. "수행기관"이란 시와 용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1.~ 5.(생략) <u><신 설></u> 6.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5.(현행과 같음)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유자사업비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생략) 1.~ 3.(생략) <u><신 설></u> <u><신 설></u> 4.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기금운용현황 보고 5.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u>15명</u> ----- -----. ② ----- <u>위원 중에서 호선</u> ----- ----- <u>재정담당 부서장</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때에는</u>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u><신 설></u> ⑥ ~ ⑨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 ⑦~⑩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관리)	제9조(기금의 관리)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① (생략)</p> <p>②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③ (생략)</p> <p>④ <u>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① <u>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u></p> <p>② (현행 제1호와 같음)</p> <p><u><삭 제></u></p> <p>③ <u>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호와 같음)</p> <p><u><삭 제></u></p> <p>⑤ <u>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p>
<p><u>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u> (생략)</p>	<p><u><삭 제></u></p>
<p><u>제11조(결산 및 보고)</u> (생략)</p>	<p><u>제10조(결산 및 보고)</u>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존속기한)</u> (생략)</p>	<p><u>제11조(존속기한)</u>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12조(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p>